

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

청 구 인 ○ ○ (전화)

주민등록번호

주소

후견인과의 관계

사건본인 ○ ○ ○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등록기준지(국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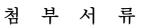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2014. 00. 00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사건본인은 2013. 12. 31. 사망하여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.
- 3. 청구인은 2014. 00. 00.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해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재산이 다액이고,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법정기간 내에 이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4.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

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사건본인)	각 1통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	1통
3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	1통
4. 기타(소명자료)	○통

2013 . O. O.

위 청구인 ㅇㅇㅇ (인)

(0	순계 대한법률구조공단
1	7
.or.kr	

제출법원	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(지방법원, 조물			
청구권자	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(민법 제957조)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 제957조,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.가사비송사건 라류 및 제 44조 이하	
불복절차 및 기간				
비 용	·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·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			
요 건	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,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함에 있어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(민법 제957조)			